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59 발의연월일: 2024. 11. 1.

발 의 자:이용우·김태선·정혜경

박홍배 • 이학영 • 김선민

신장식 • 황정아 • 안호영

정진욱 • 이기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, 노동시간,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.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"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"을 "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"으 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(안 제11조제1항).

나.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"(적용 범위)"를 "(적용 범위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"을 "근로자를"로 하고, 같은 항단서 중 "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"를 "사업 또는 사업장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 제11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상 제11조(적용 범위 등) ① 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│ 근로자를------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용한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 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----- 사업 또는 사업장 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②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하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적용할 수 있다. 수 있다. 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